

환경부 공고 제2010-377호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
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10년 12월 24일 / 환경부장관

1. 개정이유

교육기관의 장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관리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기술인력 교육 실시결과 통보 절차 마련(안 제30조의5)

- (1)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실시결과 통보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교육 수료자 관리 등에 어려움 발생
- (2)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절차 개선
- (3) 중간처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수료현황 파악이 용이하여 체계적인 교육 관리 등에 활용 기대

나. 철도 선로 발생 건설폐토석 재활용기준 개선(안 별표1의2)

- (1) 철도 선로 발생 건설폐토석 중 중간처리기준 및 재활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하도록 되어 있어 기업의 부담 및 불편 발생
- (2) 중간 처리기준 및 재활용기준을 만족한다고 시·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재활용 가능
- (3)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현장 재활용 가능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정적 부담 등 완화

환경부 공고 제2010-373호

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 지정 고시 제정 입안예고

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8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른 “축산농가 등 폐석면 배출 시설물”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 제정함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

2010년 12월 20일 / 환경부장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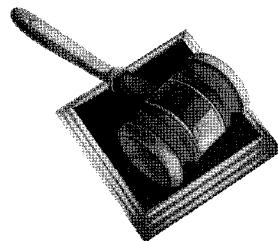
1. 개정이유

폐석면 배출량이 5톤 미만인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·제거 작업을 전부 도급 받은자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시설물을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에 있음.

2. 주요내용

가. "축산농가 등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물"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.

- (1) 농업을 하는 창고, 주택 등 일련의 시설
- (2) 어업을 하는 창고, 주택 등 일련의 시설
- (3) 축산업을 하는 창고, 주택 등 일련의 시설
- (4) 임업을 하는 창고, 주택 등 일련의 시설



환경부령 제387호

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

2010년 12월 6일 / 환경부장관

1. 개정 배경

- 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」 개정·시행(10. 4. 14)으로 기존 "환경친화기업"의 명칭이 "녹색기업"으로 변경됨에 따라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정비
- 녹색기업 지정 신청 시 사용하는 신청서 양식과 지정 시 발급하는 지정서와 현판 양식 또한 변경된 명칭과 표지를 반영하여 정비

2. 주요 개정내용

-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33조의2의, 같은 조 제1항부터 5항까지, 제33조의3, 33조의4, 같은 조 제1항제2호, 제3호 및 제2항, 제33조의5, 같은 조 제1항부터 3항까지, 제33조의6, 제33조의8 중 "환경친화기업"을 "녹색기업"으로 변경
-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「별지 22호의2」 "환경친화기업 지정(재지정) 신청서", 「별지 22호의3, 4」 "환경친화기업 지정서"의 서식 제명중 "환경친화기업" 명칭을 "녹색기업"으로 변경
- 「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「별지 22호의5, 6」 "환경친화기업 현판" 양식을 변경된 "녹색기업"의 표지를 반영한 디자인 및 사양으로 변경